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⑪

하도급 공사시 잔여공사대금 미지급 ('08. 4)

Q |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였는 바,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세청의 압류가 있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였는데, 몇 년 후 B업체가 나타나 위 공사는 자신들이 한 것이라 주장하며 잔여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그 대응방안은?

A | B업체와의 소송과정에서 A업체가 실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였고, B업체는 무관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도급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준 것이라는 점을 밝혀 B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한 국세청에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소송고지를 통해 알림으로써 만일의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도록 한다.

또한 재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답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압류처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 부분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처분이 풀리기까지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미흡 ('08. 4)

Q |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하도급대금을 5개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물가연동제에 따른 공사대금 약정을 하여 발주자로부터는 연동제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서

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하였으며, 기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A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규정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일부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대금 직접수령 계약 후 발주자 도산 시 공사대금 수령 여부('08. 5)

Q |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수급자인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발주처(민간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것을 요구하는바, 그렇게 계약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도산했을 때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 하도급계약을 기본적으로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계약관계로서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는 것이며, 발주자에 의한 하수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하수급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해도 하수급자의 원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처가 도산할 경우 원수급자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번호사〉